

VI. 그 외

A. 언어

본 정책 및 본 정책에 의해 요구된 서면 통지는 영어 및 스페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및 한국어 등 민법 1632절에 나열된 언어 및 본 수도 서비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최소 10%에 의해 발화되는 다른 모든 언어로 이용 가능하고 발행되어야 합니다.

B. 연락 정보

본 정책의 약관 아래 본 정책뿐만 아니라 미결제에 대한 주거 수도 서비스 종료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 사항을 논의하려면 특구 공익사업 청구 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 760-955-9885(또는 이메일 customerservice@sdd.sbcounty.gov)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C. 이전에 연결 해제된 서비스에 대한 반환된 수표

고객이 이전에 미결제로 인해 연결 해제된 수도 서비스를 복원하기 위해 결제 수단으로 비유통 수표를 제출하였고 특별계획구역이 서비스를 복구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은 사전 통고를 제공하지 않고 즉시 서비스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D. 정책 사본

고객이 특별계획구역의 웹사이트를 통해 본 정책의 사본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특별계획구역은 요청 시 무료로 해당 정책 사본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특별계획구역 사무실에 사본 하나를 이용 가능하도록 구비해놓을 것입니다.

E. 비허가 조치 관련 서비스의 종료

본 정책은 특별계획구역 규칙 및 규정의 위반 등 고객의 비허가 조치로 인한 서비스 종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 연간 보고

미결제에 대한 연간 수도 서비스 중단 수치가 특별계획구역 웹사이트에 보고될 것이며 주 수도 자원 통제 위원회에 보고될 것입니다.